

2.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33호 1998. 7. 9

주 요 골 자

- 가. 주택금융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자에서 년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령 제2조제2항).
- 나.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 보증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도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
-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기본재산 및 적립금과 동기금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함(령 제25조제1항).
- 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금의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택사업자 등 근로자 아닌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하도록 함(령 제25조의2).

개 정 이 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기금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보증한도에 포함시키도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8. 5. 25, 법률 제5541호)됨에 따라 그 보증한도를 새로이 정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외국환관리법 제4조제12호”를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13호”를 “외국환 관리법 제3조제1항제13호”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급여액(이하 “연간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노무단

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6만6천원 이하인 자

3.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일급영액이 6만6천원 이하인 자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부금

제5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기타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 제7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각각 “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

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근로자에 대한 우선보증) 보증 기금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외의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중 “제38조 · 제44조 및 제45조”를 “제38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9조 내지 제6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5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로 한다. 세6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 제2항, 제23조제2항 본

문, 제26조, 제33조제1항제1호 다목 · 제2호 · 제2항, 제37조, 제38조제6항 · 제8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9조제5항, 제55h, 제56조 및 제66조제2항 · 제5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36조,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66조제4항 단서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동조 동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으로 본다.